

## 단기유학 (D 2 8)

### 신청 요건:

국내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 외에 단기간 유학하려는 자.

유학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몽골 거주자는 **비자신청센터**를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유효기간이 6개월인 단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몽골 국적의 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최종 학력 증명서 및 성적표 원본을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에 제공 및 제출해야 하며, 해당 서류는 비자 심사 완료 후 여권과 함께 반환됩니다.

### 신청인 준비서류

1. 사증발급신청서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, 수수료 \$60
2. 여권 원본 및 사본 (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)
3. 표준입학허가서 및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
4.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5. **체재비 입증서류**
  - 보증인 1, 2:
  - 신분증 및 신청인과의 관계 입증서류(3촌 이내)
  - 유학경비 지원확인서 및 재직증명서
  - 유학경비 부담자의 월수입 입증자료(사회보험증, 납세증명서 등)
6. 혼인관계증명서 (최근 45일 이내 발급)
  - 미성년자(19세 미만 자)의 경우, 본인의 출생등록조회서(부모의 생년월일이 미 기재 `된 경우 부모 신분증 사본 제출)
7. 무범죄증명서(만 18세 이상, 최초 신청자에 한함) (최근 45일 이내 발급)
8. 결핵 진단서(당관 지정기관 발행)